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안전기준 마련〉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65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기준 등 마련	2
2. 생활폐기물 대행실적 평가 등 대상을 ‘처리’ 대행자로 확대	8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5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Ⅲ. 검토의견

1.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기준 등 마련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종사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안 제14조의5제1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안 제14조의5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인력·차량·안전장비 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조의5제3항),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안전기준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제6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처리종사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현행	개정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생략)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⑩ ~ ⑰ (생략)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인력·차량·안전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근로조건, 공정별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5. (현행과 같음)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⑩ ~ ⑰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함)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

음(제14조의5¹⁾).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작업안전 기준 】

-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장(직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대행)
- (안전기준) ▲(차량 안전장치) 후방영상장치,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보호장구) 안전화, 방진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구 지급 의무화
▲(작업안전수칙) 주간 작업, 3인 1조, 악천후 보호조치 등
- (실태조사) 기준 준수 → 실적 제출(지자체→기후부) → 현장확인·분석(협회·기후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²⁾함에 따라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5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공포(법률 제21129호, 2026. 11. 12. 시행)되었음.

한편, 현행법의 ‘처리³⁾’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는데, 안전기준이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만 적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선일보, “광주 아파트 단지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치인 초등생 숨져”, 2024. 10. 30.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용되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제안 이유 참조).

2024년도 기준 생활폐기물은 총 2,376만톤이 발생하여 재활용 1,384만톤(58.2%), 소각 568만톤(23.9%), 매립 266만톤(11.2%) 등으로 처리되었는데, 재활용가능자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부분 재활용되고, 종량제 방식은 소각 및 매립됨.

【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

(단위: 만톤)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량	%	발생량	%	발생량	%
총 계		2,304	100.0	2,241	100.0	2,376	100.0
매 립		236	10.2	239	10.7	266	11.2
소 각		553	24.0	557	24.8	568	23.9
재 활 용	소계	1,379	59.8	1,316	58.7	1,384	58.2
	물질 재활용	-	-	1,054	47.0	1,096	46.1
	에너지 회수	-	-	262	11.7	287	12.1
기 타		137	5.9	130	5.8	159	6.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요약), p.40 재구성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⁴⁾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종사자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업 환경과 안전관리는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됨.

종사자들 대다수가 분진(95%), 악취(90%), 소음(85%), 유해가스(8

4) 국가인권위원회,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2022. 12. <연구 요약> 참조

0%)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나 업무 관련 보호구 지급은 부족한 실정⁵⁾이고, 각 공정별 안전조치의 현장 이행력 또한 저조⁶⁾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직 근로자의 법정 의무 교육시간⁷⁾을 충족하는 비율이 60%에 불과하여 사업장의 안전교육 준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기준, 실태조사 등 적용대상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처리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안전교육 등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국폐기물협회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달리 일반 제조업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

5) 음식물처리장 종사자의 33%~43%만 미끄럼방지 장화를 지급받고 있고,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는 소각장 기계 운전원 67.7%, 기계 정비·시설관리원 72.2%만 지급받고 있으며, 각반도 재활용 선별장 선별원의 28.3%, 찢림·절단 보호 장갑도 6.2%만 지급받고 있음.

6) - 생활폐기물 처리 컨베이어 작업: 2인 1조 작업 미수행(22.7%), 컨베이어 비상정지 스위치 사용 불가(20%)
- 음식물쓰레기 처리 작업: 투입시 외 개구부 상부 덮개 미폐쇄(24.2%), 안전난간 미설치(25.8%)
- 재활용쓰레기 처리 작업: 이물질 제거시 보조기구 미사용(36%), 재활용플라스틱 압축단은 3단 이상 적재금지 및 즉시 반출 체제 확립 미준수(23.7%)

7)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시간(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과 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특별히 필요한 안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별도의 안전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 소각장이 본래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그 중 일부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 작용하여 처리대행자의 행정 부담과 현장 피로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은 ① 생활폐기물 처리공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②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에 따른 행정 부담 및 현장 피로도가중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생활폐기물 대행실적 평가 등 대상을 ‘처리’ 대행자로 확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실적 평가, 계약 내용 및 비용 지출 내역 공개, 계약 해지, 과징금 처분 대상을 ‘수집·운반 대행자’에서 ‘처리 대행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u>수집·운반</u> 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 ----- ----- <u>처리</u> 를-----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u> 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u>환경미화원</u> 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u>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u> ----- ----- <u>처리</u> <u>종사자</u>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u>	4. <u>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u> -----

현행	개정안
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생략) 6.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u>(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u>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나. (생략) 7.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u> 시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u>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제14조의2(<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u>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u>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u>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 ----- -----. 5. (현행과 같음) 6. <u>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u>----- -----<u>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u>----- ----- -----. 가.·나. (현행과 같음) 7. <u>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u> 시 <u>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u>과----- ----- -----. ⑨·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u>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u>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 ----- -----<u>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u>----- ----- ----- -----

현행	개정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4조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8)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는 ① 대행용역 원가계산, ② 매년 1회 이상 대행실적 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대행자에 대한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조치, ③ 계약 내용 및 비용 지출 내역 공개, ④ 「형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대행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제8항),

현행법 제14조의2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준수사항 및 과징금 처분 규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제도에서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제한¹⁰⁾할 수 있어 독점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상 그 적용범위가 ‘수집·운반 대행자’로 한정되어 있어 시설 기반의 ‘처리(재활용, 소각, 매립 등) 대행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실

9)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 평가나 계약 해지 등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민간 위탁처리가 2021년 576만톤에서 2023년 623만톤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 위탁 처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 】

(단위: 만톤)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총 계	1,095	4	576	1,060	5	611	1,040	6	623
매 립	247	-	1	211	-	1	177	-	1
소 각	440	-	61	428	-	67	434	-	64
재활용	401	4	510	408	5	540	421	6	552
기 타	7	-	4	13	-	3	8	-	6

자료: 국가통계포털-“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_생활폐기물” 재구성

이에, 개정안은 대행실적 평가 등 대상을 ‘처리 대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화성시와 관련 업계(한국폐기물협회,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첫째,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등은 대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여 대행자에 대한 실질적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주민만족도, 지역 청결 등 대행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대행실적 평가항목 】

항목(100점)	내용
주민만족도 (30점)	• 전량, 정시, 밀폐, 청결, 안전 수거 등 올바른 수거 • 소음, 악취, 차량청결 등 생활환경 보전 • 친절, 청렴, 복장 등 시민편의 • 종합만족도
현장평가 (40점)	• 전량, 정시, 청결 등 수거구역 현장평가 • 밀폐, 세차, 도색 등 차량 관리 •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 • 차량 안전장비, 작업자 안전장비, 휴게실, 샤워장 등 작업자 위생·안전 • 작업자 만족도
서류평가 (30점)	• 민원대응, 기동반, 민원대응 만족도 • 적정인력, 임금, 근무복 등 인력관리 • 차량수, 노후차량 비율, 청결, 친환경청소차 등 장비관리 • 사고, 교육, 작업시간, 작업기준 등 안전관리 • 행정처분 이행, 지자체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거버넌스 참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각·매립·재활용처리 대행은 대행업체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행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통제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대행실적 평가의 실효성이 낮음.

둘째, 소각·매립·재활용처리 대행은 단기간, 일회성 등 수시 및 필요시 이루어져 연속성이 낮아 대행실적 평가의 필요성이 낮고, 해당 지

역 주민만족도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8